



계약심사업무 길라잡이

2018. 1.



목 차

I. 계약원가심사 제도 개념 및 운영성과	
1. 제도개념	2
2. 추진경위	2
3. 추진방향	2
4. 연도별 계약심사 실적	3
II. 계약원가심사 제도 일반	
1. 목 적	5
2. 운영근거	5
3. 계약원가심사 대상 및 처리기한	6
4. 주요 심사내용	8
5. 업무처리 절차	9
III. 분야별 원가계산 길라잡이	
▣ 공사분야 원가계산 길라잡이	11
1. 공사 계약원가심사의 의의	12
2. 공사의 분류	12
3. 계약원가심사 요청 구비서류	13
4. 계약원가심사 주요 심사내용	15
5. 공사 계약원가심사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22

▣ 용역분야 원가계산 길라잡이	25
1. 용역 계약원가심사의 의의	26
2. 용역의 개념 및 종류	26
3. 계약원가심사 요청 구비서류	27
4. 계약원가심사 주요 심사내용	28
5. 용역 계약원가심사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48
▣ 물품분야 원가계산 길라잡이	49
1. 물품 계약원가심사의 의의	50
2. 물품의 분류	50
3. 계약원가심사 요청 구비서류	50
4. 계약원가심사 주요 심사내용	51
5. 물품 계약원가심사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55

IV. 참고자료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57
2. 분야별 계약원가심사 요청서 서식	61

I. 계약원가심사 도입 및 추진현황

1. 계약원가심사제 의의 및 운영성과

● 제도개념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임.

● 추진경위

시 기	연 혁	비 고						
2010.05.11.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업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2011.01.10.	• 감사담당관 계약심사팀 신설							
2011.01.17.	• 계약심사업무 시행계획 수립(구청장 방침)							
2011.04.29.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정 및 시행	계 약 심 사 시						
	<table border="1"> <thead> <tr> <th>공 사</th> <th>용 역</th> <th>물품의 제조·구매</th> <th>설계변경</th> </tr> </thead> <tbody> <tr> <td>5천만원 이상</td> <td>3천만원 이상</td> <td>1천만원 이상</td> <td>계약금액 1억원이상 (1회 10%이상 증액)</td> </tr> </tbody> </table>		공 사	용 역	물품의 제조·구매	설계변경	5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공 사	용 역	물품의 제조·구매	설계변경					
5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계약금액 1억원이상 (1회 10%이상 증액)					
2012.09.14.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개정 및 시행	계 약 심 사 대 상 기 준 금 액 확 대 시 행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공 사</th> <th>용 역</th> <th>물품의 제조·구매</th> <th>설계변경</th> </tr> </thead> <tbody> <tr> <td>3천만원 이상</td> <td>2천만원 이상</td> <td>9백만원 이상</td> <td>계약금액 5천만원이상 (1회 10%이상 증액)</td> </tr> </tbody> </table>		공 사	용 역	물품의 제조·구매	설계변경	3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공 사	용 역	물품의 제조·구매	설계변경					
3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9백만원 이상	계약금액 5천만원이상 (1회 10%이상 증액)					
2015.09.25.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개정 및 시행	계 약 심 사 대 상 기 준 금 액 확 대 시 행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공 사</th> <th>용 역</th> <th>물품의 제조·구매</th> <th>설계변경</th> </tr> </thead> <tbody> <tr> <td>2천만원 이상</td> <td>1천만원 이상</td> <td>6백만원 이상</td> <td>계약금액 5천만원이상 (1회 10%이상 증액)</td> </tr> </tbody> </table>		공 사	용 역	물품의 제조·구매	설계변경	2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공 사	용 역	물품의 제조·구매	설계변경					
2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6백만원 이상	계약금액 5천만원이상 (1회 10%이상 증액)					
2017.07.01.	• 감사담당관 계약심사팀 폐지, 감사팀에 전담인력 배치	조 직 개 편						

● 추진방향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신뢰 행정 구축
- 철저한 원가분석에 의한 예산낭비요인 사전방지
- 사업추진의 적정성 및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 도모

● 연도별 계약심사 실적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건수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비고
2011 (11.4.29.시행)	계	64	15,685	15,292	393	2.51	
	공 사	29	7,149	6,969	180	2.52	
	용 역	18	7,493	7,311	182	2.43	
	물 품	17	1,043	1,012	31	2.99	
2012	계	85	15,785	15,659	126	0.79	
	공 사	37	10,432	10,357	75	0.72	
	용 역	24	4,391	4,353	38	0.87	
	물 품	24	962	949	13	1.32	
2013	계	165	21,624	21,470	154	0.71	
	공 사	80	14,530	14,416	114	0.78	
	용 역	38	5,617	5,592	25	0.44	
	물 품	47	1,477	1,462	15	0.98	
2014	계	158	25,951	25,451	500	1.93	
	공 사	81	18,939	18,498	441	2.32	
	용 역	36	5,741	5,704	37	0.64	
	물 품	41	1,271	1,249	22	1.74	
2015	계	200	38,820	38,295	525	1.35	
	공 사	92	21,869	21,484	385	1.76	
	용 역	55	15,565	15,468	97	0.62	
	물 품	53	1,386	1,343	43	3.07	
2016	계	311	36,429	35,675	754	2.07	
	공 사	143	28,166	27,458	708	2.51	
	용 역	100	6,294	6,253	40	0.64	
	물 품	68	1,969	1,964	6	0.31	
2017	계	363	41,648	41,091	557	1.34	
	공 사	150	28,852	28,345	507	1.76	
	용 역	116	10,646	10,606	40	0.37	
	물 품	97	2,150	2,140	10	0.46	

II. 계약원가심사 제도 일반

II. 계약원가심사 제도 일반

● 목 적

공사와 용역, 물품 제조·구매 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계약심사 담당 직원이 거래실례가격 조사, 현장 확인 및 불필요한 공종제거 등을 통해 심층적인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산정,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방지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8항(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2017.07.26.)]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571호 2015.09.25.)

● 계약원가심사 대상 및 처리기한

- 대상기관: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구의회사무국, 강북구시설관리공단
- 대상금액(추정금액)

구 분	구 자체심사		서울시 심사역력
	공사	자체사업	시비 재배정 사업 및 국·시비보조사업
원 가 심 사	공사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상 (조경·전기·통신·설비 공사는 3억원 이상)
	용역	1천만원 이상	기술용역: 2억원 이상 일반·확충용역: 1억원 이상
	물품	6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중 1회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공사 -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 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 금액의 5% 이상인 공사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 발주공사 중 1회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공사(일부발주 제외)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관급재료비 + 부가가치세)

◎ 추정가격

-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한 가격
-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해당 규격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

※ 추정가격 = 공급원가 = 공급가 = 공사원가

◎ 기초금액

-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 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계약심사 담당자가 적정여부를 검토한 금액

-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당해 비목의 계상 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 조정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

※ 기초금액 = 추정가격(공급원가) + 부가가치세 = 도급비

◎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

◎ 추정금액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

※ 추정금액 = 추정가격(공급원가)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
(도급비) (관급비)

■ 제외대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 절차가 우리구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에서 심사를 득한 사업
- 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를 득한 사업
-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2천만원 미만의 공사
 - 나. 1천만원 미만의 용역
 - 다. 6백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 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 공사(설계변경 포함) 또는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 중 1회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미만인 공사

-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 나.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 다. 상품권, 유류,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보험, 차량구매, 특정제품, 식당 식자재 구매, 교육용 콘텐츠 구매·임차, 공통물품(소모품) 단가계약, 서울시 통합발주 의약품(검사시약 등) 단가계약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
 - 라. 신규공종, 비목의 추가 없이 단순물량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되는 공사
- 마.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의 사업

■ 처리기한: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휴일, 휴무일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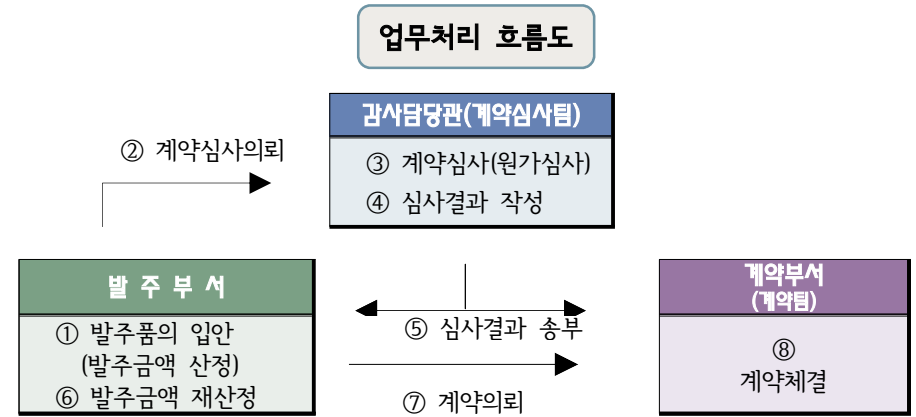
● 주요 심사내용

■ 기초금액을 작성할 경우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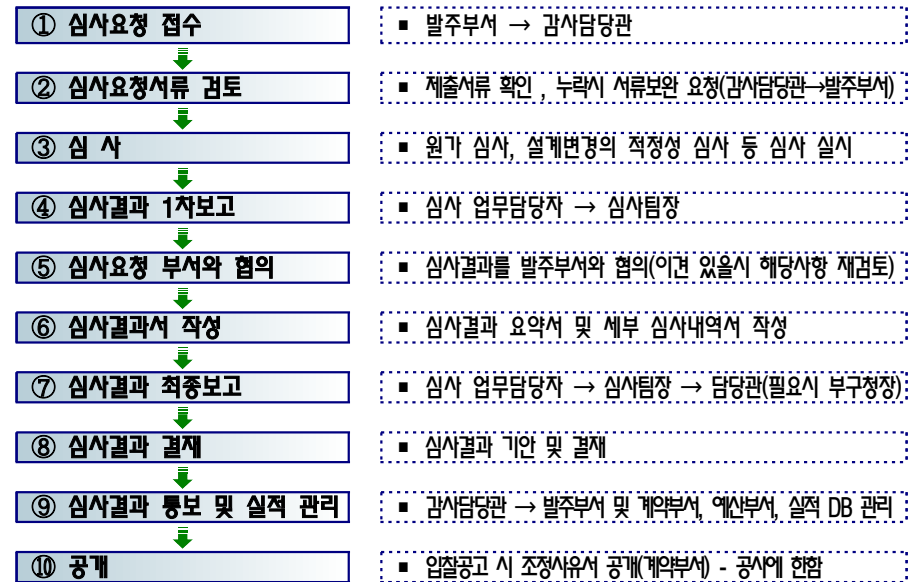
-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 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등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가격 적정성
-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및 기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전 증감금액의 적정성 검토

● 계약원가심사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



Ⅲ. 분야별 원가계산 길라잡이

- ◆ 공 사
- ◆ 용 역
- ◆ 물 품

공사분야 원가계산 길라잡이

● 공사 계약원가심사의 의의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원가로 사업비를 조정.

● 공사의 분류

- **전 설 공 사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조성공사를 포함)
- **전 기 공 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식의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 설비는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
-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 **문화재수리공사 :**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한 재수리 공사
- **기 타 공 사 :** 위에서 언급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 지하수개발, 소음·진동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외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기타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공사 계약원가심사 요청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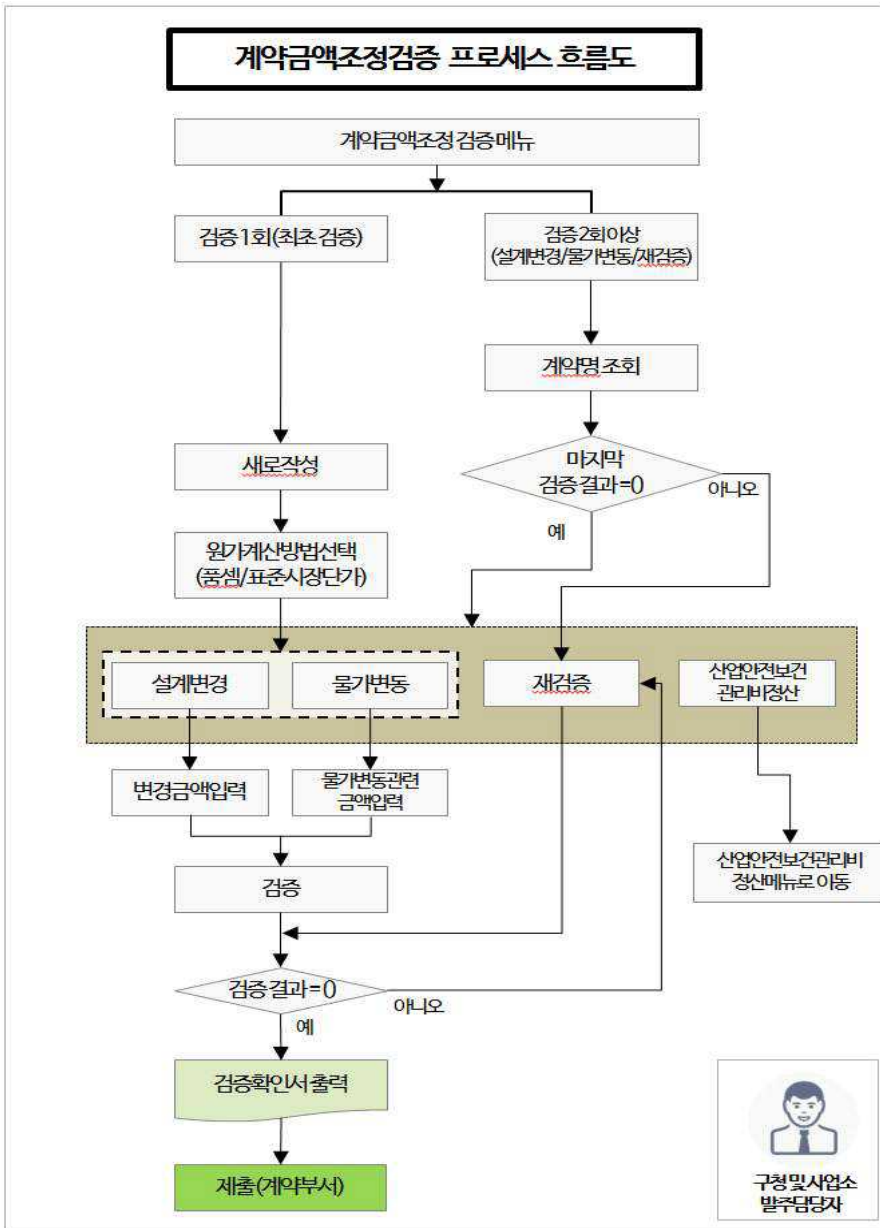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심사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하여야 함.

- 계약심사 요청서(사무자동화서식)
-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 포함) 등
- 시방서
- 설계도면
- 과업내용서
- 비목별 기초계산서
- 기계경비 산출서
-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EMS, EBS 또는 엑셀 등 내역화일, Auto Cad도면)
-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보조자료)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 동시 제출

참고 |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조정 제비율 등 검증 이행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검증시스템 -

<http://98.33.2.89/cav>



● 심사내용

심사항목	주요심사내용
원가계산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금액에 따른 예정가격작성 방식 적정 여부 조정계수 및 제경비 산출식 적정 여부 사회보험 및 각종 경비요율에 대하여 심사 당시에 고시된 요율 적용 여부 안전관리비 계산시 관급자재비의 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제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산출내역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역서의 수량 확인 및 노임할증 과다 여부 공통가설공사비의 순공사비로 산정 여부 중복 공종 포함 여부 공사 진행상 필수적이지 않은 공종 포함 여부 작업분류의 적합성 및 단가적용 오류 확인
일위대가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적용 여부 표준품셈에 명확한 규정이 없을시 질의회신 등의 내용 반영 여부 실시공 과정 미반영 일위대가 적용에 일관성 유지 및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단가조사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정단가 적용 여부 및 견적서 내용 확인 단가조사의 정확성 조립생산 자재내역 상세조사 여부
기계경비 산출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요장비 적정성 및 단가 적용 여부
자재단가 및 장비가격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구매 단가, 시중자재 단가, 견적단가, 장비가격 확인

1. 원가계산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각종 제경비 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각종 경비요율에 대하여 심사 당시에 고시된 요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p>※ 참고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시 관급자재비의 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제외 여부 <p>※ 참고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시 산정하는 고정금액(예 : 1.86% 시 5,349천원)을 총 공사에 대하여 1회만 적용하지 않고, 분야별 공사(건축, 토목, 조경 등)에 포함하여 중복산정 되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 여부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제비율 적용기준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구 분	적용방법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적 용 기 준
간접노무비	(직노) × 율	<재료비+직노+산출경비>의 합계액	조달청 요율
산재보험료	(노) × 율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고용노동부고시 요율
고용보험료	(노) × 율		국토교통부고시 요율
건강·연금보험료	(직노) × 율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	국토교통부고시 요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율		국토교통부고시 요율
퇴직공제부금비	(직노) × 율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	조달청 요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참조)	조달청 요율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수수료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참조	국토교통부고시 요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 + 직 노 + 도급만담) × 율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만담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재료비(관급포함)+직노>의 합계액 ※ 관급비 제외 × 1.2배 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 적용	고용노동부고시 요율
기타 경비	(재+노) × 율	<재료비+직노+산출경비>의 합계액	조달청 요율
환경보전비	(재+직노+산경) × 율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참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일반관리비	(재+노+경) × 율	추정가격 기준	조달청 요율
이 율	(노+경+일) × 율	추정가격 기준	조달청 요율
공사손해보험료			지방자치단체 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4-3-9)

2. 내역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내역서의 수량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량산출서의 수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수량 단위 오류 적용으로 과다계상 여부 (예 : kg ≠ ton, a ≠ m², m³ ≠ m² 등) 각종 계산서의 자재 규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노임할증 과다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위대가 없이 내역서에 노무비를 포함한 단가를 적용한 경우 자재할증 물량으로 수량을 산정하여 노무비도 할증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공통가설공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비항목으로 분류할 공통 가설공사를 재료비+노무비+기계경비로 구분하여 순공사비로 산정 여부
중복공종 포함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가계산 경비항목에 환경보전비를 산정하고 내역서의 직접 공사비에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포함하여 이중계상되었는지 여부
공사 진행상 필수적이지 않은 공종 포함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 요청된 공사의 특성상 실제 시공시 필요치 않은 공종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공사와 별개로 구매하여 설치할 수 있는 품목을 직접 공사비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작업분류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작업으로 가능한 공종을 야간작업으로 구분하여 야간할증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는지 여부 지세별 할증의 적정성 여부 등
단가적용 오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공도(현장설치도)로 조사된 단가에 추가로 노무비 지급 등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내역서상 자재물량을 산정하고 일위대가서에도 포함 계상하였는지 여부
작업부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재처리 해당금액을 직접공사비에서 감액처리 하였는지 여부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3. 일위대가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표준품셈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료 및 노무량 적용 내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셈의 단서조항 미숙지로 인한 이중계상 항목 포함 또는 손울 적용 오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셈의 공량산출(설비) 및 재료할증 적용 오류는 없는지 여부 노임 및 품의 할증은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공사의 제한적 적용 여부
표준품셈에 없는 공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셈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질의회신 등의 내용 반영 여부
실시공 과정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작업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품셈을 적용함에 따른 과다계상 여부
일위대가 적용에 일관성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한 공종의 일위대가에 대하여 독립된 단가와 타 일위대가에 포함된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설계도서간 불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방서,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조사서간 일치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여부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4. 단가조사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비 고
적정단가 적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임단가, 기계경비(환율, 재료비) 등에 대하여 설계 당시 발표 되어 있는 단가로 적용하였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재단가는 가격정보 단가를 우선 적용 가격정보에 없는 품목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시중 물가조사지 (물가지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등) 단가를 조사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 적용 시중 물가조사지 단가가 가격정보 단가 보다 저렴할 경우 물가 조사지 단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재처리 등 공사금액을 공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단가 중 높은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도착도 단가는 운반비 제외 현장설치도 단가는 설치비 제외 	
견적서 내용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비교 하였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적서내 자재비 및 노무비 단가가 적정한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가적용 시 부가세 및 제경비 제외하였는지 여부 	
단가조사의 정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방서 및 도면에 정해진 자재 단가 조사 여부 	
조립생산 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작을 수반한 견적은 도면을 바탕으로 자재내역 등이 상세하게 조사되었는지 여부 	설비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 노임, 수입자재 수입물품원가계산 적용 여부 	설비공사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5. 기계경비 산출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소요장비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요장비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규모에 적절한 장비 선정 여부 공종별 시공에 적합한 장비 선정 여부 신형장비 적용의 적정성 여부
단가 적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기가격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기계 손료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재료비(경유, 휘발유) 및 노임단가를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6. 자재단가 및 장비가격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조달구매 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청 나라장터 활용(http://www.g2b.go.kr) 시중 물품 단가와 비교 확인 대량 사용 품목인 경우 조달가격 또는 관급구매 전환 가능 확인
시중자재 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격정보,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2개 이상의 물가지료를 확인 비교 견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규격의 적정 확인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물품인도조건 확인(상차도, 도착도 등) 대량 사용 자재인 경우 별도 견적 처리
견적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작 구매 및 특수 규격의 자재인 경우 견적단가 활용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징구 가격 비교 인도조건 확인(운송비, 부가가치세 등)
장비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품셈 「건설기계가격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생산 또는 수입장비 확인 수입장비는 환율 적용 장비가격 환산 국내 미등록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면장을 확인, 장비가격 결정 장비적용 손료 결정

● 공사 계약원가심사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건설기술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소음 · 진동 규제법
- 지하수법 등

2. 예규, 고시, 지침 등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등

3. 실거래가격적용 관련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공표한 표준시장단가
- 조달청장이 공표한 가격정보 등

4. 설계관련 공통대가

- 자체 토목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
-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설계지침 (건설행정부서)
- 상수도공사 일위대가(상수도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도로공사발간 설계지침
- 지방자치단체 자체 건설공사 설계기준
- 견적에 의한 실거래가격
- 전문기관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물가정보, 물가자료,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5. 노임단가적용 기준

-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 측량 노임단가(공간정보산업협회)
- 엔지니어링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 건설사업관리부문(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6. 제경비율 산출근거

- 조달청장이 공표한 제비율
- 관련 법령에 의한 제비율
 - 산재보험료율 등 고시
 -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적용기준 등

7. 품셈 등 적산 기준

- 표준품셈(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등)
- 건설신기술품셈(한국건설신기술협회)
- 조경공사 적산기준(조경사회, 대한건설협회 등). 공공기관 적산, 견적기준 등

8. 관련부서 및 인터넷 사이트 등

-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노동부, 환경부 등)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 한국건설기술연구원(<http://www.kict.re.kr>)
- 관련 기관
 - 대한건설협회(<http://www.cak.or.kr>)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http://www.ekacem.or.kr>)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http://www.kenca.or.kr>)
 - 한국전기공사협회(<http://www.keca.or.kr>)
 - 한국건설교통기술협회 (<http://www.kcnet.or.kr>)
 - 한국건설자원협회(<http://www.koras.org>)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http://www.sw.or.kr>)
 - 한국조경수협회(<http://www.klta.or.kr>)
 - 중소기업중앙회 (<http://www.kbiz.or.kr>)
 - 한국지반공학회 (<http://www.kgshome.org>)
 - 국토지리정보원(<http://www.ngi.go.kr>)
 - 금융결제원(<http://www.kftc.or.kr>)
 - 서울외국환중개(주) (<http://www.smbs.biz>)

용역분야 원가계산 길라잡이

● 용역 계약원가심사의 의의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과업내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산정 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적정한 원가로 사업비를 조정함.

● 용역의 개념 및 종류

「지방계약법」상의 용역이라 함은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수리 등을 제외한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건설기술용역, 학술용역, 그 외 일반용역으로 분류한다.

- **건설기술용역** :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고,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등을 근거로 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 **일반용역** : 학술연구용역과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

● 용역 계약원가심사 요청 구비서류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심사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하여야 함.

- 계약심사 요청서
-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 원가계산서, 과업내용서, 인쇄물산출 기초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 비목별 기초계산서(학술연구용역에 한함),
-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계획서, 견적서 등)

● 심사내용

1. 과업내용 및 설계내역 검토

▶▶▶ 학술연구용역

심사항목	주요 심사내용
과업내용서 및 설계내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업내용서와 내역서 등을 통한 용역의 특성파악 및 서류 상호간 내용일치 여부 자료입력을 통한 적정성 및 오류 파악 (수량, 필요경비 등 포함여부) 학술연구용역 대가기준 및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여부 연구원의 업무 및 월수 적정산출 여부 여비 등 경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시·도 산하 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관리비 적정 여부 정규직인 경우 인건비 중복계상 여부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제 승률 부과 적정 여부

▶▶▶ 건설기술 및 일반용역

심사항목	주요 심사내용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및 설계내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와 내역서 등을 통한 용역의 특성파악 및 서류 상호간 내용 일치 여부 적용대가기준 및 적용노무비의 타당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입력을 통한 적정성 및 오류 파악 노무비중 상여금, 제수당, 퇴직총당금 등의 적정산정 여부 연금 및 보험료율의 적정산정 여부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비율 적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용역사업의 경우 제경비, 기술료, 등 제비율의 적정 여부 기타 기술용역 여부 등

2. 산출내역 검토

▶▶▶ 산출내역서 검토

항목	검토 내용	비고
현장 및 상황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조건에 맞는 품셈적용 여부 주·야간 등 실 상황 적용 여부 	
단가적용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공도(현장설치도)로 조사된 단가에 추가로 노무비, 운반비 등을 이중계상 하였는지 여부 견적가 적용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중복 적용 여부 노무비에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을 포함하고 다시 제경비 등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노무비의 월단가(M/M) 산정시 적용 기준일수가 적정한지 여부 견적가 적용시 제경비, 기술료, 이윤, 부가가치세의 적정(중복) 적용 여부 	정보통신용역
공종별 주요물량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량산출서와 내역서 물량 상이 여부 수량단위 오류로 인한 과다계상 여부 	
거래실례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실례가격 우선 반영 여부 확인 	
표준품셈 적용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료 및 노무량 적용상 내용 확인 (예 : 품셈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미반영 등) 품셈의 단서조항 미숙지로 인한 이중계상 항목 포함 또는 손율 적용 등 오류 여부 	
실시공 과정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작업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품셈을 적용함에 따른 과다계상 여부 	
일위대가 적용에 일관성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한 공종의 일위대가에 대하여 독립된 단가와 타 일위대가에 포함된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용역과 관련한 특별 검토사항 등 	

III ▶ 수량 및 단가산출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비 고
적정단가 적용여부	• 노임단가, 기계경비(환율) 등 설계당시 발표된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적용(시중물가지 단가와 비교) 하였는지 여부	
	• 시중물가지조사지 단가적용 시 2개 이상의 단가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는지 여부	
견적서 내용확인	• 견적가 적용시 2개 이상의 업체견적을 받아 적용하였는지 여부	
	• 견적서상 자재비 및 노무비 단가가 적절한지 여부	
	• 부가세 및 제경비 등이 이중계상 되었는지 여부	
단가조사의 정확성	• 도면 및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적합한 자재의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운전경비 산정	• 재료비(경유, 휘발유) 및 노임단가를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예) 폐기물 처리용역 등
	• 주연료 및 잡재료, 조종원 수량은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 중기가격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작업량 산정	• 시간당 작업량 등을 산정하기 위한 각종 계수를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 공사 등 수량발생원과 물량일치 여부	
	• 단위환산에 따른 오류 및 과다산출 여부	
기 타	• 당해 용역과 관련한 특별 검토사항 등	"

3.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1) 학술연구 용역

원 가 계 산 서

(단위: 원)

구 분	내 용	산 출 기 준	관 련 근 거	
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저위 감독 결론도출제(대학교수 수준)	- 인원 x 기준단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총당금 반영 가능) - 기준단가: 별첨 참조	
	연 구 원	책임연구보조자(대학교수 수준)		
	연 구 보 조 원	통계처리, 번역수행자(대학교수준)		
	보 조 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수행자		
	소 계			
② 경 비	여 비	국내외 여비(공무원여비규정, 관계 공무원 여비 제외)	인원 x 단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5절제4관
	유 인 물 비	각종 보고서 작성비(지대포함)	수량 x 단가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전 산 처 리 비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등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5절제4관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	"	"
	회 의 비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 소요 경비(수당 등)	인원 x 단가	수당은 예산편성기준 참조
	임 차 료	특수실험실습기구, 회의장임차료 등	수량 x 단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5절제4관
	교 통 통 신 비	시내교통비, 전산전화료, 우편료	인원 x 단가	"
	감 가 상 각 비	실험실습기구,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법인세법에 의한 계산
	조 사 비 용	현황조사 비용(인건비, 경비 등)		필요한 경우에만 계산
	소 계			
③ 순 원 가		① + ②		
④ 일 반 관 리 비	기업의 유지관리활동비로서 순원가에 속하지 않은 영업비용 (5% 이내로 결정)	③의 5% 이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상가격 작성요령 제2장제5절제4관	
⑤ 일반관리비 합산원가		(③ + ④)		
⑥ 이 윤	영업이익	⑤의 10% 이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상가격 작성요령 제2장제5절제4관	
⑦ 이 윤 합 산 원 가		(⑤ + ⑥)		
⑧ 부 가 가 치 세		⑦의 10%		
총 용 역 비		(⑦ + ⑧)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자부 예규에 의함

학술연구 원가계산 요령

▶ **학술연구용역비의 구성요소**

가. 순용역원가 = 인건비+경비

- (1) 인건비: ①책임연구원 ②연구원 ③연구보조원 ④보조원
 (2) 경비: ①여비 ②유인물비 ③전산처리비 ④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⑤회의비 ⑥임차료 ⑦교통통신비 ⑧감가상각비 ⑨연구활동비

나. 일반관리비 = 순용역원가 × 일반관리비율(5%이내)

다. 이윤 =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 × 이윤율(10%이내)

라. 부가가치세 =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이윤) × 부가가치세율(10%)

마. 용역비 구성도

인 건 비	경 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율	부 가 가 치 세
① 책임연구원 ② 연구원 ③ 연구보조원 ④ 보조원	①여비 ②유인물비 ③전산처리비 ④시약재료비 ⑤회의비 ⑥임차료 ⑦교통통신비 ⑧감가상각비 ⑨연구활동비			
순 원 가				
일 반 관 리 비 합 산 원 가				
이 율 합 산 원 가				
용 역 비 총 액				

▶ **계약 발주가격 산정 기본원칙**

가. 거래실례가격을 우선 적용

-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www.pps.go.kr → 가격정보)
 (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정가격협회)
 (3)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장표 등 객관적 증빙자료)

나.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각 비목 또는 품목별로 원가계산

▶ **학술연구 용역비 요소별 소요금액 산출기준**

가. 인 건 비: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1) 연구요원의 구분

- ① 책임연구원: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1인 원칙)
 ② 연구원: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책임연구원의 연구활동 보조)
 ③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의 기능 보유자(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 수행)
 ④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노무 수행

(2) 인건비 총액: 기준단가에 의한 금액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① 기준단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별표2

②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 제수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금으로 지급(근로기준법제56조)
- ※ 직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식비 등은 기준단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계상 불가
- 상여금: 연간 지급액이 기준단가 월급여액의 400%를 초과할 수 없음
- 퇴직급여충당금: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나. 여 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국내 및 국외 출장비용

(1) 국내여비: 일비+숙박비+식비+운임

- ① 시외출장에 필요한 여비만 계상하고 시내 여비는 교통통신비에 계상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 15일분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산정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1일 단가표를 적용

(2) 국외여비: 항공운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

- ※ 산정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운임 정액표와 일비 등의 금액표를 참고하되 실비용을 조사하여 적용

(3)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용역비에 계상 할 수 없음

(4) 출장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 할 때만 여비 계상

다. 유인물비 :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등

라. 전산처리비 :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마.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예-조사비)

바. 회의비 :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에 필요한 비용

사. 임차료 : 특수실험실습기구 및 회의장소 임차비용

아.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등

자. 감가상각비 : 특수실험실습기구와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비

※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식에 따라 계산하되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차. 일반관리비 : 인건비와 경비를 합한 순원가에 일반관리비율(5%이내)을 곱한 금액

카. 이윤 : 순원가에 일반관리비를 합한 총원가에 이윤율(10%이내)을 곱한 금액

타. 부가가치세 : 총원가에 이윤을 합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

▶ 서울연구원에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비 산정특례

가. 개발연구원 소속의 정규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인력이 학술연구용역 연구요원으로 편성되어 있을 경우 용역비에는 그 인건비를 계상 하지 않음

나. 일반관리비를 산정하기 위한 인건비 기준금액에는 용역비 산정에서 제외되는 정규직 인건비 상당액을 포함하도록 함

다. 서울연구원의 일반관리비율은 2%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 위촉연구원의 인건비는 총 용역비의 25%이내로 함

※ 관련처참: 서울시 조직 12405-575(20113.4.21) 시정개발연구원 수탁사업 운용지침

▶ 학술연구 용역 계약심사 요청시 제출서류

가. 용역계약 심사요청서<서식 용역-1>

나. 부속서류

- (1)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 (2) 학술연구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 (3) 수의계약 등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 (4)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시행방침서 및 과업내용서 등)

▶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2(행안부 예규 참조)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16년 기준)

등 급	월 임금('17)	월 임금('18)
책임연구원	월 3,110,229원	월 3,169,323원
연구원	월 2,384,881원	월 2,430,194원
연구보조원	월 1,594,213원	월 1,624,503원
보조원	월 1,195,701원	월 1,218,419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가단가는 2018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2017년 1.9%)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관련규정>

제26조(인건비)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2017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 1.9%(전년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소비자물가지수	4.0	2.2	1.3	1.3	0.7	1.0	1.9

* 자료: 통계청, 2017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2) 폐기물수집 · 운반, 처리 용역

원 가 계 산 서

(단위 : 원)

구 분	내 용	산 출 기 준	관 련 근 거
① 재 료 비	유류대	경유, 휘발유 등 연료유	수량 x 단가 차량차량체입찰및 계약협상준 제장
	잡품 등	주연료비의 정해진 비율	주연료의 %
	소 계		
② 노 무 비	운전기사	운반차량 운전사	인원 x 단가 차량차량체입찰및 계약협상준 제장
	보통인부	상차등 필요시 인부	인원 x 단가
	중기운전자	백호등 중기 운전자	인원 x 단가
	소 계		
③ 경 비	기계경비	기계손료, 감가상각비 등	산출가 차량차량체입찰및 계약협상준 제장
	폐기물 처리비	종류별, 성상별 구분 적용	수량 x 단가
	기타 소요경비	기계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	산출가
	소 계		
④ 순 원 가		(①+②+③)	
⑤ 일 반 관 리 비	기업의 유지관리 활동비로서 순원가에 속하지 않은 영업비용 (판매비, 광고비, 이자 등 제외)	④의 10% 이내	차량차량체입찰및 계약협상준 제장
⑥ 일반관리비 합산원가		(④+⑤)	
⑦ 이 운	영업이익	(⑥-①)의 10%이내	차량차량체입찰및 계약협상준 제장
⑧ 이윤합산 원가		(⑥+⑦)	
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	⑧의 10%	
총 용 역 비		(⑧+⑨)	

※ 필요항목만 계상

폐기물처리 원가계산 요령

▶ 폐기물의 종류

- 사업장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며,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다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나뉘어짐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건 설 현 장 발 생 폐 기 물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토사, 폐콘크리트, 페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 돌, 페타일, 폐석재, 폐기와, 폐블럭, 건설오니(탈수 건조된 것),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 폐목재류(버팀목, 목제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지정폐기물	○ 폐종이류(포장재, 벽지 등)		
	○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 오니류(굴착오니, 침전물 등)		
사 업 장 일반폐기물	○ 폐섬유류(의류, 실, 끈 등)		
	○ 소각 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 폐기물처리비의 경우는 종류를 명확히 구분한 후 단가 적용(폐기물 분류 예시 참조).

▶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기준 및 방법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참조)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552호 2015. 8.10)
- ※ 혼합된 경우에는 위 종류별로 최대한 분류하여 해당폐기물을 적용하고, 더 이상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혼합폐기물로 분류 적용

○ 건설현장 발생 폐기물의 분류(“예시”)

명 칭	폐기물의 종류	비 고
페콘크리트	건설폐기물	해체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시 발생
페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폐기물	해체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시 발생
페벽돌	건설폐기물	해체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시 발생
페블럭	건설폐기물	해체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시 발생
폐기와	건설폐기물	토목공사, 건축공사시 발생
폐목재	건설폐기물	토목공사, 건축공사시 발생
폐합성수지	건설폐기물	토목공사, 건축공사시 발생
폐섬유	건설폐기물	토목공사, 건축공사시 발생
페벽지	건설폐기물	토목공사, 건축공사시 발생
건설오니	건설폐기물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시 발생
폐금속류	건설폐기물	해체공사, 토목공사시 발생
폐유리	건설폐기물	토목공사시 발생
페타일 및 페도자기	건설폐기물	토목·건축공사시 발생
페보드류	건설폐기물	건축공사시 발생
페판넬	건설폐기물	건축공사시 발생
건설페토석	건설폐기물	건축공사시 발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토목·건축공사시 발생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지정폐기물	고체상태 제외
오니류	지정폐기물	수분함량 95%미만, 고형물함량 5%이상
폐농약	지정폐기물	농약제조, 판매소에서 발생한 것
폐산	지정폐기물	
페알칼리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지정폐기물	분진, 폐주사물, 폐촉재, 폐흡착재 등
폐유기용제	지정폐기물	할로겐족
페페인트 및 페락카	지정폐기물	
폐유	지정폐기물	폐식용유, 폐흡착제, 폐흡수제 제외
페석면	지정폐기물	토목공사, 건축공사시 발생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지정폐기물	
폐유독물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기관, 시험, 검사 기관등에서 발생한 것
TV,냉장고, 전축 등	사업장 일반폐기물(폐가전제품)	해체공사시 발생
잔반, 조리폐기물 등	사업장 일반폐기물(음식물폐기물)	건설공사장 발생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사업장 일반폐기물(기타)	건설공사장 발생

※ 지정폐기물의 종류(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 용역비 산출근거

1) 용역비 구성 : 수집·운반비(상차비 포함) +처리비(소각·중화·파쇄·고형화 재활용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양처리 등 최종처리)

가. 운반비 (상차비는 필요 시 별도 계상)

○ 적용기준

- 건설표준품셈과 원가계산요령에 의해 산출된 운반비
- 전문가가격조사기관(종합물가정보 및 월간 물가자료 등)이 조사하여 공표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비
((사)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http://www.cwa.or.kr>))제공 : 1m³ 또는 1ton당 단가, 운반거리에 따른 보간법 적용 및 폐기물비중 반영)
- 운반·처리업체의 최저 견적가 중 저가 적용
- 처리장 결정 후 운반거리 확정(노선도 작성) : 노선별 운반속도에 따라 적용 산출

나. 처리비

○ 적용기준

- ① 전문가가격조사기관(종합물가정보 및 월간 물가자료 등)이 조사하여 공표한 건설폐기물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
((사)한국건설자원협회(<http://www.koras.org/>))제공
 - ② 중간. 최종처리업체의 최저 견적가격
 - ③ 환경부 고시 등 ①, ②, ③ 비교 저가 적용
- ※ 최종처리가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를 통한 매립 시 동기관 반입수수료 적용

2) 발주부서 유의사항

- 발주방법 :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 원칙 (5톤 이상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 폐기물이 적게 발생되도록 설계 시부터 고려
- 처리방법을 시방서 등에 명시하고, 수급자의 시공계획서(처리방법 포함) 징구
- 처리내용에 맞게 처리비용 산출(예, 폐콘크리트의 경우 폐콘크리트 처리비용 적용)
- 혼합된 경우에는 폐기물종류별로 최대한 분류하여 해당폐기물 처리비를 적용하고, 더 이상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혼합폐기물로 분류 적용

▶ 폐기물처리 용역 설계 시 유의사항

- 발생처 : ○○○공사 건설현장(매립물, 비산폐기물, 포장물, 구조물 등)
- 처리장 : ○○○처리장(소재지 : 경기도 ○○○ 소재, 운반거리 : km)
- 분 류 : 재활용품(콘크리트, 아스콘 등), 소각대상(목재류, 합성수지류), 매립대상
- 운반도구 : 24톤 덤프트럭
- 상차도구 : 0.7m³ 백호
- 수집 및 상차비 포함여부
- 작업구분 : 주간, 야간
- 산출근거 제시
 - 운반비(수집, 상차비 구분) : 품셈산출가, 견적가, 고시가, 협회단가 등
 - 처리비 : 처리방법(재활용, 소각, 매립 등)에 따라 품셈산출가, 견적가, 고시가, 협회 단가 등
- 처리비중 제시 : 표준품셈 참조
- 발주물량 산출 : 자연상태, 흩어진 상태의 물량인지 근거 제시
- 관련법규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3) 영상(CF)제작 용역

원 가 계 산 서

(단위 : 원)

구 분	내 용	산 출 기 준	관 련 근 거	
① 재 료 비	Tape, CD, DVD 등 각종 필름류 등	제품살체를 형성하는 원재료·매입부품·수입부품(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 포함) 등	직접재료비 : 소요량×단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소 계			
② 인 건 비	기획구성료 연출료, 조연출료 출연료, 성우료 기술인건비 코디, 스태프, 리스트 등	직접종사자의 노동력 대가(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적용 가능)	직접계산 : 노무량 × 노임단가 (한국광고영상제작자협회 제작기준단가 준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소 계			
③ 경 비	촬영·지재 부문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 렌즈, 휠터 등 임차료	직접계산 및 제작기준단가 표 적용 : 제작목적물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한해 적용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조명·지재 부문	촬영에 필요한 라이트류 임차료		
	특수·지재 부문	촬영에 필요한 크레인, 지미집, 발전차 등 임차료		
	촬영준비 부문	촬영준비를 위한 스태프들의 교통, 운반, 식비 등		
	본촬영 부문	촬영시 필요한 교통, 운반, 숙박, 식비 등 견행비		
	스튜디오 부문	스튜디오 필요시 대관료, 세트제작료 등		
	미술비 부문	대소도구료, 의상비, 모형비, 분장료, 코디료 등		
	동화촬영 부문	애·메이션 및 특수영상효과를 위한 장화비용		
	동화촬영 부문	애·메이션 및 특수영상효과를 위한 촬영비용		
	스틸촬영 부문	특수효과를 위한 사진자가 촬영의뢰비 등		
	녹음 부문	편집된 작품에 음향효과, 대상 등 녹음료		
	제작·사용 부문	작품에 사용하는 사진, 화면, 초상권 등 사용료		
	편집·특수작업 부문	편집시설 사용료 및 작품 편집·오·정비		
	NTC 부문	네거 필름을 디지털로 옮기는 작업료		
CG작업 부문	컴퓨터그래픽 및 HARRY 작업료			
카네이코 부문	극장상영용 타이프로 만드는 작업료			
완성·장행 부문	극장용 작업시 소요되는 경비(수수료 등)			
극장용 프린터 부문	완성된 작품을 극장용 필름으로 제작·납품료			
제작수수료 등	프로덕션이 대외지불하는 제작수수료			
소 계				
④ 순 원 가		(①+②+③)		
⑤ 일 반 관 리 비	기업의 유지관리 활동비로서 순원가에 속하지 않은 영업비용(판매비, 광고비, 이자 등 제외)	④의 5%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⑥ 일 본 본 비 합산 단 가		(④+⑤)		
⑦ 이 윤	영업이익	(⑥-①)의 10%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⑧ 이윤 합산 원 가		(⑥+⑦)		
⑨ 부 가 가 치 세	부가가치세법 제2조1항	(⑧의10%)		
총 용 역 비		(⑨+⑩)		

※ 적용기준 :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 기준 준용

영상(CF)제작 원가계산 요령

▶ 제작비 산출시 준비자료

○ 제작개요 (예시 : 해당항목만 기재) (제작일수 : 00일)

제작 형태	매체 및 용도	규격 및 수량	촬영 개요
비캠 또는 다비타	CATV, TV방송(홍보용)	30"(국,영) * 각 2편	○ 기획·구성안에 따라 결정 * 촬영장소 : 스튜디오(1일), 야외로케(장소, 15일), 해외로케(장소, 13일) 등 총 촬영일수 : 29일 * 촬영시기 : 3월 ~ 5월 * 촬영방법 : 풍경, 특수(물속, 항공 등) * 출연자 : 메인 1명(유인촌) 엑스트라 3명 * 성우 : 8등급 1명(유강진) * 성우등급은 (사)한국성우협회 등록 기준에 의함.
VHS(다규멘터리)	비디오(홍보용)	30"(국,영)* 각 120개	
35mm(다규멘터리)	극장용(홍보용)	15"(국,영) 각 70벌	
CD(다규멘터리)	Homepage(홍보용)	15"(국,영) 각 1편	
DVD(다규멘터리)	전광판(홍보용)	15"(국,영) 각 2편	

※ 제작수량 산출은 배부계획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임.

첨부 : 비디오 등 배포목록(배포처가 정해진 경우) 1부.

○ 수량산출서(예시 : 해당항목만 기재)

구분	항 목	규 격	단위	수량	산 출 근 거
재 료 비	Digi-Beta테잎	30'(국어)	개	2	편집용 1개, 납품용 1개
	CD	30'(국어)	개	1,000	각실과 500개, 자치구 500개(배포목록에 의거 산출)
	DVD	30'(국어) 30'(영어)	개	95	국어판 : 각실과 70개, 자치구 25개 영어판 : 각실과 75개, 자치구 25개(")
노 무 비	연출료	A,B,C급	명	1	1명x1편
	조연출료	"	명	3	1명x1편(감독보조 및 의상, 미술, 연기자)
	촬영감독	"	명	1	1명x30일
	조명감독	"	명	1	1명x30일
경 비	성우료	8등급,외국	명	2	유강진x1일(스튜디오), 토니 김x1일(스튜디오)
	조명기자재	팅스텐 1.2kw	개	2	한강 야외촬영용
	촬영기자재	디지베타	대	1	디지베타 1대x1일, 필터 1셋, 어안렌즈mmx1개
	특수기자재	지미짚	대	1	지미짚 1대x1일(야외촬영시), 소형용달차임대 1대x1일, 항공촬영 4시간x2회 등
	편집 부문		식	1	편집실 사용료 1일, 자막사용료, 극장용편집 등
	녹음 부문		식	1	녹음실 사용료 1일, 선곡효과사용료, 동시녹음료 등
	미술비 부문		식	1	의상료(메인모델) 1벌, 소품 3종 등
	완성진행 부문		식	1	극장용심의로 27,000원/편당
	극장용프린터부분		식	1	35mm 30'x70벌(배포목록에 의거 산출)

※ 공통사항 : 재료비, 인건비, 경비 산정시 명칭, 규격, 사용일수, 적용사유 등을 기획·구성안에 의거 실제 소요되는 수량을 명확히 기재

4) 시설물 유지관리(시설물유지, 청소, 경비 등) 용역

원 가 계 산 서

(단위 : 원)

구 분	내 용	산 출 기 준	관 련 근 거		
① 재 료 비	각종 재료	용역수행에 필요한 재료에 한함	- 수량x단가		
	소 계				
② 인 건 비	기본급	직접종사자의 노동력 대가	- 노임단가x월 평균근무일수 근로기준법43조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제 수 당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와 야간근무	- 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 간수x연장근로시간x1.5 근로기준법제56조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휴일근로수당	(하오10시~상오6시) 또는 휴일 근로자 : 통상임금의 100분의	- 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 간수x휴일근로시간x1.5	
		야간근로수당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 간수x야간근로시간x0.5	
	년차수당	1년간 8할 이상 개근한자 : 15일/년	- 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 간수x8시간x15일÷12월	근로기준법제60조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상여금		- 통상임금×400% 이내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4-5-1	
	퇴직충당금	계속근로연수 1년 : 30일분의 평균임금/년	- (기본급+제수당+상여금)÷30일분	근로기준법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소 계					
③ 경 비	국민연금		- (기본급+제수당+상여금)×공시율	국민연금법 제88조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공시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산재보험료		- (기본급+제수당+상여금+사비)×공시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법 제6조	
	임금채권보장보험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복 리 후 생 비	피복비	제복, 작업복 등 구입비		
		안전화	안전화 구입비	- 계약목적물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한함	
		식비지원금	중식비 지원		
	교통비	교통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종업원급여총액의 0.5/100	- 인건비 × 0.5%	지방세법 제248조	
	장애인고용분담금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상시근로자-적용제외근로자)의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8조	
감가상각비	기계장비의 감가상각비	- (장비금액-잔존액)×내용연수상각율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소 계					
④ 순 원 가		(①+②+③)			
⑤ 일 반 관 리 비	기업의 유지관리 활동비	④의 5%이내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4-4-6		
⑥ 일반관리비 합산원가		(④+⑤)			
⑦ 이윤	영업이익	(⑥-①)의 10%이내	"		
⑧ 이윤 합산 원 가		(⑥+⑦)			
⑨ 부 가 가 치 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	(⑧의 10%)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총 용 역 비		(⑧+⑨)			

5) 경비(무인기계) 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구분		내용	산출기준	관련 근거	
순 용 역 원 가	① 재 료 비	기기설치비	수량 x 단가	지방자치단체 행기준 제2장	
		소 계			
	② 노 무 비	관제인원	관제장비 점검관리	인원 x 단가	지방자치단체 행기준 제2장
		기술인원	장비관리	"	"
		대처인원	유사시 출동대처	"	"
		순찰인원	평상시 순찰	"	"
		관리인원		"	"
	소 계				
	③ 경 비	기기 사용 료	관제장비	관제장비 감가상각비	지방자치단체 행기준 제2장
			대처장비	대처장비 감가상각비	"
			가입자기기	가입자기기(임대) 감가상각비	"
			운반비		"
		소 계			
차량유지비		출동 및 순찰차량 유지관리비	"	"	
기기수리비		설치장비 수리비	"	"	
통신비		전화료, 전용화선료 등	"	"	
기술유지비			"	"	
시설임대료		영업을 위한 사무실, 기зақ 등 임대료	"	"	
손해보험료	영업배상보험	"	"		
소 계					
④순원가			(①+②+③)		
⑤일반관리비	기업의 유지관리 활동비로서 순원가에 속하지 않은 영업비용 (판매비, 광고비, 이자 등 제외)	④의 5% 이내	지방자치단체 행기준 제2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2장	
⑥일반관리비합산원가			(④+⑤)		
⑦이윤	영업이익	(⑥-①)의 10%이내	지방자치단체 행기준 제2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2장	
⑧이윤합산원가			(⑥+⑦)		
⑨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	⑧의 10%			
총용역비			(⑧+⑨)		

※ 경비회사별 원가구성이 다르므로 관련업계의 원가를 파악하여 필요한 항목만 적용.

6) 조사(여론조사 등) 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구분		내용	산출기준	관련 근거	
순 용 역 원 가	① 재 료 비			지방자치단체 행기준 제2장	
		소 계			
	② 노 무 비	책임연구원	지휘, 감독, 결론 도출자 (대학부교수 수준)	인원 x 단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지방자치단체 행기준 제2장
		연구원	책임연구보조자 (대학조교수 수준)	"	"
		연구보조원	통계처리, 번역수행자 (조교수준)	"	"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수행자	"	"
		소 계			
	③ 경 비	유인물비	설문지 및 보고서 작성비	부수 x 단가	조달청 인세기준 요금
		조사원수당	설문조사원 수당	인원 x 단가	
		검증원수당	조사원료분 검증원 수당	"	
		오리엔테이션비	조사원 및 검증원 교육비	"	
		식대	조사원 및 검증원 식대	"	
		교통통신비	시내교통비, 전화료 등	회수 x 단가	
코딩비		설문조사 전산처리	부수 x 단가		
에디팅비		설문조사 전산처리	부수 x 단가		
편칭비		설문조사 전산처리	부수 x 단가		
답례품		설문조사 응답자배부 답례품	수량 x 단가	필요한 경우에만 계산	
소 계					
④순원가			(① + ② + ③)		
⑤일반관리비	기업의 유지관리 활동비로서 순원가에 속하지 않은 영업비용 (판매비, 광고비, 이자 등 제외)	④의 5% 이내	지방자치단체 행기준 제2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2장	
⑥일반관리비합산원가			(④ + ⑤)		
⑦이윤	영업이익	(⑥ - ①)의 10%이내	지방자치단체 행기준 제2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2장	
⑧이윤합산원가			(⑥ + ⑦)		
⑨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	⑧의 10%			
총용역비			(⑧ + ⑨)		

※ 산출기준은 학술연구용역 준용

7) 정보통신 용역

소프트웨어사업대가 원가계산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원가계산서

비 목	내 용	산 출 기 준
직접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관련 기술자 임금단가×소요인원”으로 계상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 공표한 사업별·등급별 임금단가 적용(별표4) ○ 공표임금단가에는 급료·제수당·상여금·퇴직적립금·산재보험금 등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에 의한 임금 범위 ○ 기술자등급기준 : 별자참조
직접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실비를 조사,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 ■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사용료) ■ 도서인쇄비 및 청사진비 ■ 측량비 ■ 시험조사비(토질재료 등) ■ 모형제작비 ■ 자문비 ■ 위탁비 ■ 현장운영비(현장보조원급료 및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비조사계상
제 경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 이외의 간접비 ○ (직접인건비) × 110~120%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계상
기 술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보유기술사용 및 기술축적대가 ○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계상
제 세 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해당세액이 발생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세율적용
총 원 가	위 합계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제세액)	
부가가치세	(총원가) × 부가가치세율(10%)	
합 계	(총원가) + (부가가치세)	

(지식경제부공고)에 의한 실비정액가산방식 원가계산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SW개발비 등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공표/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공공부문)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원가계산 작성.

< 관련규정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2017.7.26.)]

<p>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p> <p>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등에 필요한 정보화사업의 원가 산정 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표하는 “DB구축비 대가 기준 가이드”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p> <p>②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달품목인 경우 조달단가 2.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3. 제1호, 제2호 외의 경우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 <p>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예산수립 시 제12조에 따른 제안서보상에 관한 비용, 제30조, 제32조부터 제33조에 따른 제안서평가 관련 비용, 제41조에 따른 작업장소에 관한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한다.</p>
--

● 용역 계약원가심사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1.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

2. 기타 자료

- 조달청(www.pps.go.kr) 시설분야용역 대가산정기준(공통표준모델)
-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
- 각종 원가산정 자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한국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협회)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설계감리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 기타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등
- 시중노임단가
 - 공사부분(대한건설협회 공표자료)
 - 제조부분(중소기업중앙회 공표자료)
- 기타 원가분석에 필요한 자료 등

물품분야 원가계산 길라잡이

● 물품 계약원가심사의 의의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규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산정 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원가로 사업비를 조정함.

● 물품의 분류

현행 법규상 물품의 제조와 구매를 명확히 구분할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구분	제조 구매	완성품 구매
개념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
입찰 참가 자격	당해 제조업자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 계약원가심사 요청 구비서류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하여야 함.

구분	구비서류
완 제 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구매계약심사요청서, 산출기초조사서 · 구체적인 규격서, 사양서 등
제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제조(수리)계약심사요청서, 산출기초조사서 · 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시방서, 사양서 등
수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제조(수리)계약심사요청서, 산출기초조사서 · 수리명세·수리단위별 내역서 등
인 쇄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물계약심사요청서, 산출기초조사서, 사양서 등 ·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 시에는 내역서
기 획 편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물기획편집계약심사요청서, · 기획편집(디자인) 산출기초조사서, 과업내용서

● 심사내용

구분	심사내용
제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규격품의 제작설치 및 수리 등 물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물품제조를 위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심사
완 제 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제품구매, 임차(부동산 제외) 등 물품 구매시 조달청 가격정보,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물가정보지 등), 직접 조사한 시증거래가격 등을 조사하여 물품의 적정 구매가격을 심사
인쇄물, 기획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자, 리플릿, 전단지, 캘린더, 포스터 등 각종 인쇄물의 사양에 따라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거 제조원가를 산출하며, 기획편집료(디자인)의 별도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시증거래 가격을 준용하여 적정가를 산정함

1. 제조 구매

심사항목	주요 심사내용
산출기초조사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규격별 단위당 가격을 조사, 적정 가격으로 적용 여부
원가계산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간접재료비 및 작업설·부산물 등 적정 산정 여부 · 직·간접 노무비 적정 산정여부 ·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적정 산정 여부

▶▶▶ 제조 원가계산서 검토

구 분		검 토 내 용
재 료 비	직접재료비	• 단위당 최저가격을 적용, 소요량을 곱하여 구함
	간접재료비	•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 (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포장재료비 등)
	작업설· 부산물(Δ)	• 발생재 처리시 조사가격 중 최고가격을 적용하여 감 적용함
노 무 비	직접노무비	• 공종별 노무량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 산출
	간접노무비	•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간접 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
경 비		•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등)
일 반 관 리 비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에 따라 당해비율 이하 적용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비율
이 윤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이윤율에 따라 당해비율 이하 적용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비율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이윤율 및 일반관리비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이윤율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함.

구 분	이윤율 (%)
• 공사	15
• 제조·구매	25
• 수입물품의 구매	10
• 용역	10

- 일반관리비율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함.

구 분	이윤율 (%)
• 공사	6
•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12
•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 수입물품의 구매	8
• 그 밖에 물품의 제조·구매	11
• 폐기물처리·재활용 용역	10
•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9
•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8
•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5
• 장비 유지·보수 용역	10
• 기타 용역	6

2. 완제품 구매

구 분	주 요 심 사 내 용
가격 조사	•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 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하여 계약목적물의 규격별 단위당 가격을 조사, 최저 가격으로 적용 여부
산출기초조사서 검토	• 조사한 가격 중 적정가격으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3. 인쇄물·기획편집

구 분	주 요 검 토 내 용
용지단가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정보지 해당월 단가 적용 • 물가정보지 외 특수지는 지류업체 견적이 적용 • 국판(국전지)은 4×6전지 단가의 69.4% 적용 • 용지 평량과 색깔군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므로 색깔군까지 파악, 조사해야 함.
전자조판 및 편집료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인쇄물 기준요금 적용 • 발주부서에서 File 제공하므로 책자 내지 면수에서 10% 감소 • 조판료는 실규격 단가 적용 • 조판할증 또는 감액요인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조정 • 추가인쇄의 경우 전자조판 및 편집료는 제외함 • 기획편집료를 인쇄물과 분리발주 할 경우 인쇄물의 전자조판 및 편집료는 기획 편집료에 포함(필요시 필름출력비까지 포함 가능)되어야 하며, 인쇄물 산출시 중복 되지 않도록 주의
필름출력비 및 인쇄판대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인쇄물 기준요금 적용 • 일반적으로 표지 4절, 내지 2절로 산정(국판은 국4절, 국2절) ※ 국2절, 국4절은 2절, 4절 인쇄판 단가의 69.4% 적용 • 인쇄물량, 날개표지, 양면인쇄 여부에 따라 2절 또는 전지 인쇄로 조정 • 표지는 용지소요량이 5연 이상 양면인쇄일 경우 필름출력과 인쇄 판대를 2대로 산정
인쇄료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인쇄물 기준요금 적용 • 합중(두꺼운 후지, 박엽지, 베다인쇄, 별색인쇄 등), 감산요인(국판계열 인쇄)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 • 인쇄통수에 따른 인쇄료 단가의 적정 여부 검토, 적용 ※ 이때, 인쇄통수는 용지소요량(연) × 연당통수(2절 인쇄는 1,000통 / 4절인쇄는 2,000통 / 전지인쇄는 500통)
기획편집료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디자인비는 면당 거래단가×면수 또는 전자편집디자인공 노임 × 인원 × 작업일수 적용 • 번역, 감수료는 한국통번역센터 등 번역전문기관 견적이 적용 • 사진촬영, 일러스트 등은 컷수, 규모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 교정쇄, 시안출력 등은 규격, 면수에 따른 평균거래가 적용
일반관리비 및 이윤요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옵셋인쇄의 경우 일반관리비 10%, 이윤 20% 적용 ※ 이윤 계상 시 재료비(용지대 등) 제외 여부 확인 • 경인쇄는 면당 단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 • 기획편집료는 일반관리비 5%, 이윤 10% 적용

● 물품 계약원가심사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1.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타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등)

2. 기타 자료

- 조달청 가격정보
-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물가자료, 물가정보,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노임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정) 2011.04.29. 규칙 제440호
(일부개정) 2012.09.14. 규칙 제481호
(일부개정) 2015.09.25. 규칙 제571호

IV. 참고자료

-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 분야별 계약원가심사 요청서 서식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74조제8항에 따라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원가심사 업무 등을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의 담당관 및 과

나. 보건소

다. 동 주민센터

라. 구의회사무국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단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개정 2015.9.2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등 건설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용역<개정 2015.9.25>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4.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 절차가 우리구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신설 2012.9.14>

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개정 2015.9.25>

4. 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를 받은 사업<개정 2015.9.25>

5.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2천만원 미만의 공사<개정 2012.9.14, 2015.9.25>

나. 1천만원 미만의 용역<개정 2012.9.14, 2015.9.25>

다. 6백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개정 2012.9.14, 2015.9.25>

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 공사(설계변경 포함) 또는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 중 1회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미만인 공사<개정 2012.9.14, 2015.9.25>

6.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나.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다. 상품권, 유류,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보험, 차량구매, 특정제품, 식당 식자재 구매, 교육용 콘텐츠 구매·임차, 공통물품(소모품) 단가계약, 서울시 통합발주 의약품(검사 시약 등) 단가계약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개정 2012.9.14>

라. 신규공종, 비목의 추가 없이 단순물량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되는 공사<개정 2012.9.14>

마.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7.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개정 2012.9.14, 2015.9.25>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 계약심사부서, 계약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동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신설 2012.9.14>

③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간 불일치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신설 2012.9.14>

④ 발주부서가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다르게 계약을 의뢰 한 경우, 계약부서는 예정 가격조서 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신설 2012.9.14>

⑤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9.14>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 사항과 보완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공사·용역 : 10일(공휴일, 휴무일 제외)<개정 2012.9.14>

2. 물품의 제조·구매 : 10일(공휴일, 휴무일 제외)<개정 2012.9.14>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한 번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9.14, 2015.9.25>

④ 발주부서에서는 재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사부서에 그 이견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2.9.14>

⑤ 발주부서에서 원가계산 기준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지 않고 심사를 요청한 경

우 계약심사부서에서 산정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다.<신설 2012.9.14>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강북구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이나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 변경, 품목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자문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사업분야의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9.25>
- ③ 의장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제2항의 인원 중 의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회의는 공무원, 해당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기술사(토목, 건축, 조경,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모아서 분석하여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571호, 2015.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9. 14 규칙 제4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5 규칙 제5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분야별 계약원가심사 요청서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사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입찰종료 예정일 (공개제한종료시점)	
공사금액	· 총공사비 : 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 금회공사비: 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설계자	· 상 호 : · 대표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발주처	· 담당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 예산분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표기할 것			
연번	예산분류	비고	
1	국비 : 원	국비 보조사업	
2	시비 : 원	시비재배정사업, 시비보조사업	
3	구비 : 원	구자체사업, 국비, 시비 교부금(일반, 특별)	
○ 첨부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공사 원가계산서

공사명 :

공사기간 : 20 . . . ~ 20 . . . (개월)

(단위 : 원)

○○○○ 건설공사(필요시)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순 공 사 원 가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운 반 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발급수수료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 급 액]					
관급자재비					
이 설 비					
[총공사비]					

회 위 치 도

회 투 시 도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입찰종료 예정일 (공개제한 종료시점)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발 주 처	담당자 : (전화번호 :)		
○ 개요			
※ 예산분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표기할 것			
연번	예산분류	비 고	
1	국비 : 원	국비보조사업	
2	시비 : 원	시비재배정사업, 시비보조사업	
3	구비 : 원	국비,시비 교부금(일반,특별)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조원가계산서

○ 품 명 : ○ 수 량 :
○ 규 격 : ○ 제조기간 :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조 원 가 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료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이 율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진 명																	
산출금액	원	입찰종료 예정일 (공개제한 종료시점)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발주자	담당자 : (전화번호 :)																
<p>○ 인쇄물내역</p> <p>1. 규 격 : 질(mm × mm)</p> <p>2. 수 량 :</p> <p>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p> <p>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p> <p>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p> <p>6. 제본종류 :</p> <p>7. 특수사양 :</p> <p>8. 기 타 :</p> <p>※ 예산분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표기할 것</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5%;">연번</th> <th style="width:65%;">예 산 분 류</th> <th style="width:3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국비 : 원</td> <td>국비보조사업</td> </tr> <tr> <td>2</td> <td>시비 : 원</td> <td>시비재배정사업, 시비보조사업</td> </tr> <tr> <td>3</td> <td>구비 : 원</td> <td>구자체사업, 국비, 시비 교부금(일반, 특별)</td> </tr> </tbody> </table> <p>○ 첨부 서류</p> <p>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p> <p>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p> <p>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p> <p>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p> <p>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p>						연번	예 산 분 류	비 고	1	국비 : 원	국비보조사업	2	시비 : 원	시비재배정사업, 시비보조사업	3	구비 : 원	구자체사업, 국비, 시비 교부금(일반, 특별)
연번	예 산 분 류	비 고															
1	국비 : 원	국비보조사업															
2	시비 : 원	시비재배정사업, 시비보조사업															
3	구비 : 원	구자체사업, 국비, 시비 교부금(일반, 특별)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용 지 대			
전 자 조 판 및 편 집 료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쇄비			
제본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인쇄물 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입찰종료 예정일 (공개제한 종료시점)		
예산과목			예산금액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예산분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표기할 것					
연번	예산분류		비고		
1	국비 :	원	국비보조사업		
2	시비 :	원	시비재배정사업, 시비보조사업		
3	구비 :	원	구자체사업, 국비, 시비 교부금(일반,특별)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품 명 :
- 산출근거 :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집료'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 심사에 '필름출력비'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기타 비용			
계			
일반관리비(5% 이내)			
소 계			
이 율(10% 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공사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최초)																	
공사개요	· 변경 전 공사비 : 천원		· 변경 후 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 이 설 비 :														
설계자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발주자	담당자 :		(전화 :)														
<p>◦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p> <p>-</p>																	
<p>※ 예산분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표기할 것</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연번</th> <th style="width: 35%;">예 산 분 류</th> <th style="width: 6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국비 : 원</td> <td>국비보조사업</td> </tr> <tr> <td>2</td> <td>시비 : 원</td> <td>시비재배정사업, 시비보조사업</td> </tr> <tr> <td>3</td> <td>구비 : 원</td> <td>국비,시비 교부금(일반,특별)</td> </tr> </tbody> </table>						연번	예 산 분 류	비 고	1	국비 : 원	국비보조사업	2	시비 : 원	시비재배정사업, 시비보조사업	3	구비 : 원	국비,시비 교부금(일반,특별)
연번	예 산 분 류	비 고															
1	국비 : 원	국비보조사업															
2	시비 : 원	시비재배정사업, 시비보조사업															
3	구비 : 원	국비,시비 교부금(일반,특별)															
<p>◦ 첨부 서류-</p> <p>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지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p> <p>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p>																	